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2다242250 부당이득금
원고, 상고인 국가철도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래
담당변호사 최현우
피고, 피상고인 구미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함지
담당변호사 김판묵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2. 5. 11. 선고 2021나23538 판결
판 결 선 고 2022. 11. 1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1)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르면, 철도의 관리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고(제19조 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그 밖의 철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철도 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권한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제19조 제2항), '국가철도공단'이 위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행 범위 안에서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그 밖의 철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철도의 관리청으로 본다(제19조 제3항). 한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제28조는 철도산업기본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이 국토교통부장관을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에 '국가가 추진하는 철도 시설 건설사업의 집행(제1호)' 및 '국가 소유의 철도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 등 관리 업무의 집행(제2호)' 등을 명시하였고, 국가철도공단법 제7조는 '국가철도공단'의 사업 범위에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제1호)'와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공급 및 관리(제9호)' 등을 명시하였다.

2) 이러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국가철도공단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 체계·내용에 국가철도공단의 설립 목적 및 대행 업무의 내용·취지 등을 더하여 보면, 국가철도공단은 국토교통부장관을 대행하는 관리청의 지위에서, 국가가 추진하는 철도시설 건설사업의 집행 및 관리 업무와 함께 철도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 등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이와 별도로 철도시설 건설사업의 집행 등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관리 업무 담당자로서 그 사업부지의 취득에 관한 계약 체결권한과 함께 그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권한까지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나. 판단

1)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더라도, ① 국가가 추진하는 철도시설 건설사업인 이 사건 사업의 사업부지에 포함되는 이 사건 토지와 지장물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65조에 따라 행정청의 지위에 있는 원고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사실, ②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의 소유자인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그 매매대금으로 2,532,087,490원을 지급한 사실, ③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수인은 '대한민국'으로 표시하였지만, 원고가 업무대행자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및 매매대금 지급 업무를 담당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이러한 사실관계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대행하는 관리청의 지위에서 이 사건 사업의 집행 및 관리 업무는 물론 그 사업부지에 포함되는 이 사건 토지와 지장물의 취득·관리 업무까지 담당한 것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은 물론 그 매매계약이 무효로 됨에 따른 매매대금에 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권한도 함께 보유·행사할 수 있다.

3)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의 '행정청'의 의미와 권리행사의 범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9조 제3항 및 국가철도공단법 제7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 이동원

주 심 대법관 천대엽